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http://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4월 9일

제07-18호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 한성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hskim@kiep.go.kr](mailto:hskim@kiep.go.kr), Tel; 3460-1087)

### 주요 내용

- ▣ 한국·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7년 6월 1일부터 한국과 ASEAN 9개국과의 무역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됨.
- ▣ 한·ASEAN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 인구 5억의 거대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 특히 중국과 ASEAN간의 상품협상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한·ASEAN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시기에 있어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개방을 이끌어냈으며, ASEAN 시장에서 한국이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ASEAN과의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한국의 향후 ASEAN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ASEAN FTA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와 1인당 후생수준은 각각 0.63%와 0.65% 증가하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철강, 기타 제조업 부문의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하지만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와 CEP를 통해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지난 1월 ASEAN과의 서비스협정문에 서명한 중국에 비해 한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2007년 11월로 예정된 타결시한 내에 양측의 합의를 이루어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 ▣ 본고에서는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본 협정이 한·ASEAN 양자간의 교역 및 진출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함.

## 1. 머리말

- 한국·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국과 ASEAN 9개국과의 무역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됨.<sup>1)</sup>
  - 2003년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양측 간의 FTA 논의는 2005년 2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약 1년 반 만에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을 완료함.
  - 국회 비준절차를 마친 동 협정문은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됨.
  - 2006년 8월 상품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도 현재 서비스·투자 부문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1월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 한·ASEAN FTA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시사함.
  -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이 되고 있음.
  - ASEAN은 1992년 이후 우리나라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본고에서는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본 협정이 한·ASEAN 양자간의 교역 및 진출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함.

## 2. 한·ASEAN FTA 협정문의 구성

- 한·ASEAN FTA는 한국과 ASEAN 10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양자간 협정인 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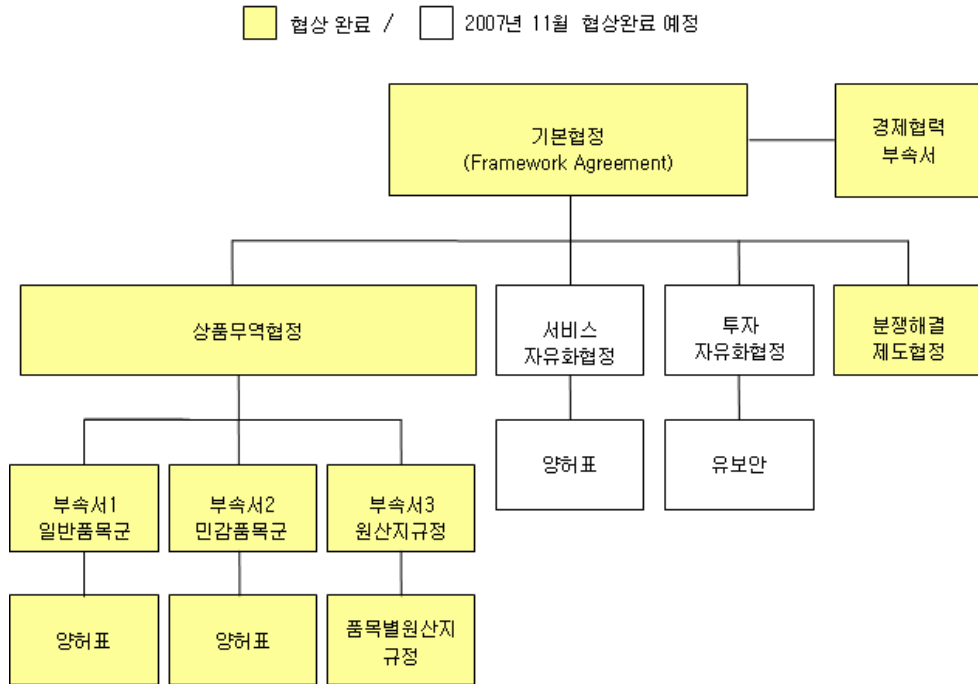
1) 태국은 상품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이 주장한 상품자유화 방식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상품협정에 참여하지 않음. 하지만 한·ASEAN 양측은 태국이 추후 서명을 통한 한·ASEAN FTA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으며 태국의 국내문제가 진정되는 대로 협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에 동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수국간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과의 협상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FTA에서 사용되던 단일협상방식이 아닌 기본협정문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투자협정을 순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함.
- 이는 중·ASEAN FTA에서 이미 사용된 방식으로, 중국의 경우에도 상품무역협정문을 서명한 후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1월에 중·ASEAN 서비스·투자 협상을 타결함.
- 기본협정은 한·ASEAN FTA의 모법(母法)으로 협정의 법적 적용범위 및 그밖의 협정과의 관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한국과 ASEAN 양측이 FTA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담고 있음.
- 2005년 12월 한국과 ASEAN 회원국 정상들은 기본협정과 이에 따르는 분쟁해결제도협정 및 경제협력부속서에 합의하였으며,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함.
- 상품무역협정은 본문과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 그리고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철폐 일정을 포함하는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대한 부속서는 각 국가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유연한 관세철폐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품목군은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짐.<sup>2)</sup>
- 또한 분쟁해결제도협정은 당사국들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관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분야 부속서는 총 19개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을 명시하고 있음.
- 경제협력분야 부속서에서 다루는 19개 분야는 양국의 교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무역 및 투자진흥 등과 같은 분야 외에도 한국이 ASEAN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 영화, 천연자원, 에너지, IT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향후 동 분야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ASEAN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자세한 내용은 제3절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참고.

그림 1. 한 · ASEAN FTA 협정 구성



자료: 김영무(2006), 「5억 거대시장 아세안과의 FTA 기본협정 서명」, 『나라경제』, 1월호, p. 73에서 발췌, 수정.

### 3. 상품무역협정문의 주요내용

#### 가. 양허안의 구성

-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인하 및 철폐에 대한 조항은 상품무역협정 제3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개의 부속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먼저 모든 품목은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분류되며 품목군의 분류는 각 당사국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하지만 한국과 ASEAN 6 국가들의 경우, 일반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전체 관세품목의 90% 이상인 동시에 총수입액의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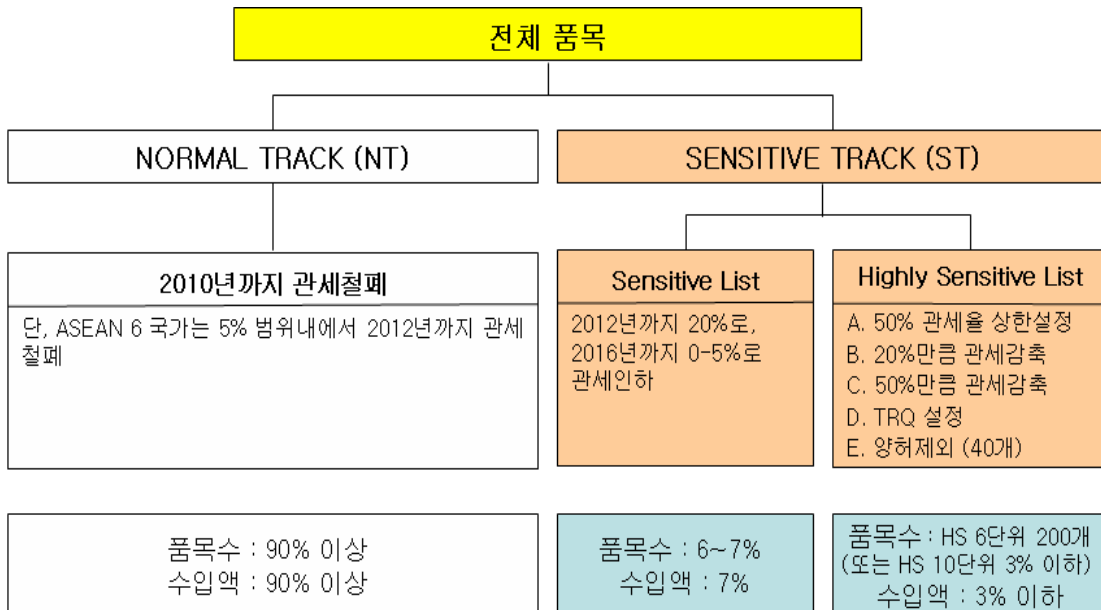
- 따라서 나머지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한국과 ASEAN 6의 경우, 전체 관세품목의

3) ASEAN 6은 ASEAN 선발참여국으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를 지칭함. 태국은 동 협정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나 서명과 동시에 ASEAN 6에 해당되는 의무가 부과됨.

10%와 총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반면에 ASEAN 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이들 국가들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총수입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베트남은 민감품목군 분류가 품목수 기준 10%와 총수입액 기준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느슨한 조건을 허용함.
-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으로 분류되는데, 일반민감품목에 포함되는 품목은 품목수 기준으로 6~7%, 그리고 수입액 기준으로 7%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초민감품목은 다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의 수는 HS 6단위로 200개, 또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품목 수의 3%와 총수입액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함.

그림 2. 관세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 분류



주: 위의 그림은 ASEAN 6과 한국에 대한 품목 분류에 적용되며 CLMV 국가에 대한 품목 분류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나. 관세철폐/인하 일정**

-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인하는 참여국의 발전 정도에 따라 ASEAN 6과 한국, 베트남, CLM 국가가 각기 다른 3가지 관세철폐 일정을 가짐.<sup>4)</sup>

- 먼저 한국과 ASEAN 6에는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함.
  - 한국의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일반품목군에 속한 상품의 최소 70%에 해당하는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며, 200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 품목의 95%를, 그리고 2010년 1월 1일까지 모든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음.
  - ASEAN 6개국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일반품목군 관세품목의 최소 50%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하며, 2009년 1월 1일까지 최소 90%에 대한 관세철폐, 그리고 2010년까지 모든 일반품목군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실시함.
  - 하지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일반품목군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철폐 연장을 허용함.
  
- 베트남의 경우 ASEAN 6보다는 느슨한 적용을 받지만 다른 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보다는 타이트한 조건을 적용 받음.
  -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2016년 1월 1일까지 모든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ASEAN 6과 같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한하여 2018년 1월 1일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함.
  - 마지막으로 CLM 국가들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역시 5% 이내의 관세품목에 대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는 관세철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은 HS 6단위의 총 5,224개 품목 중 4,742개 품목을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며, 482개 품목은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함.
  - 일반품목군은 수입액 기준으로 91.55%에 해당되며, 482개 민감품목군에 포함된 품목 중 200개(수입액 기준 2.81%)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함.
  - 특히 초민감품목중 양허제외에 속하는 품목에 HS 6단위 40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과 돛, 갈치, 명태 등 어류, 그리고 양파, 마늘, 고추와 같은 농산품을 양허제외함으로써 한국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4) CLM은 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의미함.

표 1. 우리나라 양허표 품목구성

(단위: %)

관세 철폐계획	전 품목	부문별 양허내용					
		구분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일반품목군 (NT)	4,742 (90.8)	품목수 (분야내 비율)	4,182 (96.6)	429 (63.2)	73 (60.8)	58 (60.4)	
	91.55	수입액 비율 (분야내 비율)	88.09 (95.3)	2.26 (63.6)	0.56 (37.8)	0.64 (25.2)	
민감 품목군 (ST)	소계	482 (9.2)	품목수 (분야내 비율)	147 (3.4)	250 (36.8)	47 (39.2)	38 (39.6)
		8.45	수입액 비율 (분야내 비율)	4.38 (4.7)	1.28 (36.4)	0.92 (62.2)	1.87 (74.8)
	일반 민감 품목 (SL)	282 (5.4)	품목수 (분야내 비율)	147 (3.4)	79 (11.6)	26 (21.7)	30 (31.3)
		5.64	수입액 비율 (분야내 비율)	4.38 (4.7)	0.12 (3.6)	0.08 (5.5)	1.05 (42.2)
	초민감 품목 (HSL)	200 (3.8)	품목수 (분야내비율)	0 (0)	171 (25.2)	21 (17.5)	8 (8.3)
		2.81	수입액 비율 (분야내 비율)	0 (0)	1.16 (32.8)	0.84 (56.7)	0.82 (32.6)
총계	5,224 (100)	품목수 (분야내 비율)	4,329 (100)	679 (100)	120 (100)	96 (100)	
	100	수입액 비율 (분야내 비율)	92.47 (100)	3.54 (100)	1.48 (100)	2.51 (100)	

자료: 외교통상부

■ 태국을 제외한 ASEAN 회원국들도 각각 자국의 양허허용기준에 따르는 양허표를 제출하였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전품목이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됨.

- 한·ASEAN 상품협정 제18조에 따라 한·ASEAN FTA체결이 이보다 앞서 체결된 한·싱가포르 FTA에서의 양국간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음.

- 특히 상품교역에 있어 양국은 수출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FTA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의함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철폐를 실시한 싱가포르의 경우 민감품목군을 따로 분류할 동기가 없음.

- ASEAN 각국의 양허 주요내용의 [표 2]에 정리됨.

표 2. ASEAN 회원국들의 주요 양허 내역

국명	구분	양허내용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브루나이	품목수 (비율)	품목수: 99.24% 수입액: 90.01%	품목수: 0.76%(40개) 수입액: 9.99%	품목수: 13개 수입액: 2.99%	품목수: 13개
	주요 품목	차량, 과일식물, 합성스테인플섬유	고무제 인너튜브, 액체펌프, 발전기, LD플레이어	냉장·냉동고, 고무제타이어, 차량부분품	완충기, 고무제타이어, 차량부분품
캄보디아	품목수 (비율)	품목수: 91.10%	품목수: 8.90%(465개)	품목수: 200개	품목수: 40개
	주요 품목	의류, 합성스테인플섬유, 수송용 차	토마토, 목욕용제품, 아연봉, 가스마스크	맥주, 의류, 신발류, 조립식 건축물	플라스틱제품, 방직용 섬유제, 주방용 목재가구
인도네시아	품목수 (비율)	품목수: 91.12% 수입액: 90.43%	품목수: 8.88%(464개) 수입액: 9.57%	품목수: 156개 수입액: 2.93%	품목수: 40개
	주요 품목	송신기기, 에틸렌중합체, 전기기기부분품	다랑어, 새우, 사카린, 염화비닐, 면제품	천연진주, 평판압연제품, 철강금속제	쌀, 맥주, 발효주, 폐 의료용품
라오스	품목수 (비율)	품목수: 89.93%	품목수: 10.07% (526개)	품목수: 200개	품목수: 0개
	주요 품목	건설/전력장비, 의류, 오토바이 부품	벼, 고무제품, 메리야스편물, 난방기기	쇠고기, 올리브, 토마토, 커피, 감자	-
말레이시아	품목수 (비율)	품목수: 91.16% 수입액: 90.31%	품목수: 8.84%(462개) 수입액: 9.69%	품목수: 113개 수입액: 2.99%	품목수: 39개
	주요 품목	전자, 기계부품, 화학, 운송설비, 철강	두리언, 염화메탄, 사무용품, 고무타이어	참쌀, 현미, 햇병아리, 돼지고기, 닭고기	고래, 파충류, 맥주, 발포성포도주
미얀마	품목수 (비율)	품목수: 92.48%	품목수: 7.52% (393개)	품목수: 200개	품목수: 40개
	주요 품목	기계, 의류, 전자, 플라스틱	고래, 사탕수수, 목탄, 팩시밀리, 낚시바늘	농어, 새우, 잎담배, 전동용 벨트	바다가재, 벼, 맥주, 보드카, 위스키류
필리핀	품목수 (비율)	품목수: 93.30% 수입액: 10.03%	품목수: 6.70%(350개) 수입액: 9.97%	품목수: 93개 수입액: 3.00%	품목수: 40개
	주요 품목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철강	오리, 고등어, 야자유, 소시지, 신발류	닭, 돼지, 양배추, 마늘, 플라스틱제 의류	벼, 사탕수수당, 시동전동기, 와이어링세트
싱가포르	품목수 (비율)	품목수: 100% 수입액: 100%	품목수: 0%(0개) 수입액: 0%	품목수: 0개 수입액: 0%	품목수: 0개
	주요 품목	전 품목	-	-	-
베트남	품목수 (비율)	품목수: 90.10% 수입액: 76.88%	품목수: 9.90%(517개) 수입액: 23.12%	품목수: 200개	품목수: 40개
	주요 품목	리드프레임, 프리미엄 무연자동차 휘발유, 무선랜	비누, 유리세공품, 공기조절기, 차부분품	조란, 사탕수수, 소금, 담배부산물	흡연용 담배, 평판압연제품, 모터스쿠터

자료: 외교통상부



### 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문제는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 중의 하나로, 한국보다 발전단계가 낮은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 초기부터 한국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언급을 함에 있어 매우 높은 경계심을 보임.
  -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의 인정은 양측 경제장관들간의 교환각서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SEAN 회원국은 양측간에 합의된 역외가공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함.
- 각각의 ASEAN 회원국은 개성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232개 품목(HS 6단위) 중 100개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 품목들에 대한 개성에서의 역외가공을 허용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ASEAN시장에서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ASEAN 9개국(태국 제외)이 제출한 100개 품목을 살펴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의류(24.8%), 시계(17.9)의 순으로 허용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3 참고).
- 그러나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의 ASEAN 유입에 따른 자국시장 피해를 우려하는 ASEAN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정기적인 재검토 조항, 발효 5년 후 철회 가능성을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ASEAN측에 제공함.
  -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과 한국과 ASEAN간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개성공단 제품이 실제로 ASEAN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ASEAN이 위에서 언급된 안전장치를 발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고려됨.

**표 3.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 품목의 빈도수 상위 5개 품목류**

(단위: %)

	의류	시계	신발	편물의류	전기기기 TV, VTR
ASEAN 선택한 품목비율	24.8%	17.9%	12.8%	9.1%	7.2%
개성공단 생산(예정)품목 비율(232개)	26.7%	12.1%	12.5%	9.9%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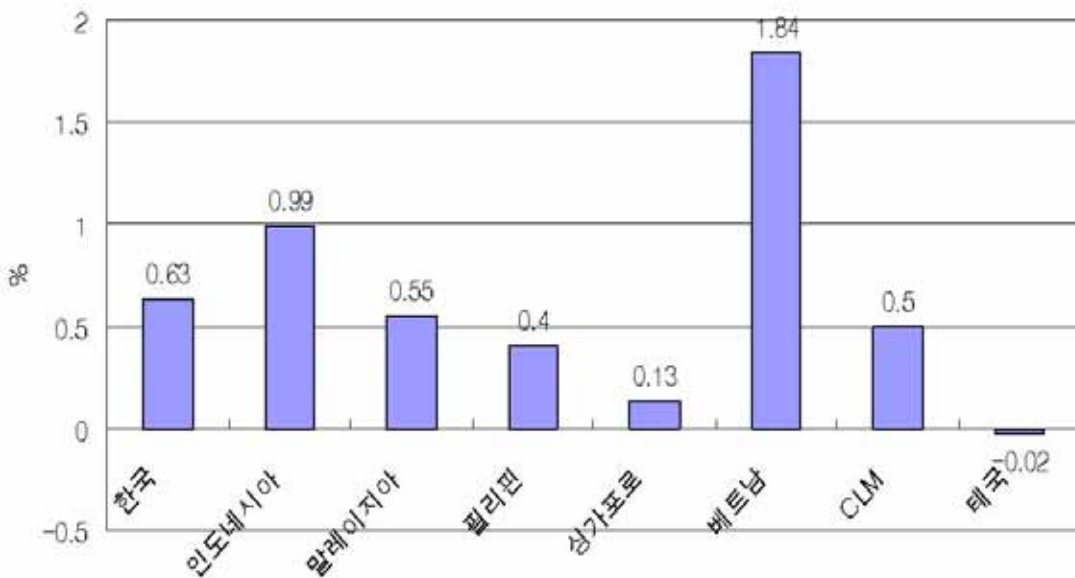
자료: 외교통상부

##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한국의 네 번째 FTA로 기록된 한·ASEAN FTA는 한국이 인구 5억의 거대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발전의 정도가 상이한 ASEAN 10개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FTA를 이끌어냄으로써 ASEAN지역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수출과 한국기업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ASEAN측으로부터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폭 넓은 역외가공 허용품목 및 기준을 얻어냄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을 수 있음.
- 특히 중국과 ASEAN간의 상품협상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한·ASEAN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일반품목군의 관세철폐 완료시기에 있어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개방을 이끌어냈다는 점과 개방의 수준이 중·ASEAN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중·ASEAN FTA의 경우 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 기준 10%라는 단일 상한선을 둔 반면 한·ASEAN FTA에서는 품목 기준 10%와 수입액 기준 10%라는 복합 상한선(Double Capping)을 둬으로써 한국의 對ASEAN 주요 수출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다루어 개방을 늦추거나 개방 품목에서 제외하려는 ASEAN측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함.
- 한편 ASEAN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에서 한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
- 현재 일본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와 유사한 성격인 포괄적경제협력(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CEP)을 체결하였으나 ASEAN 차원의 양자간 무역자유화 추진에 있어 경쟁국인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임.
- 이는 ASEAN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ASEAN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선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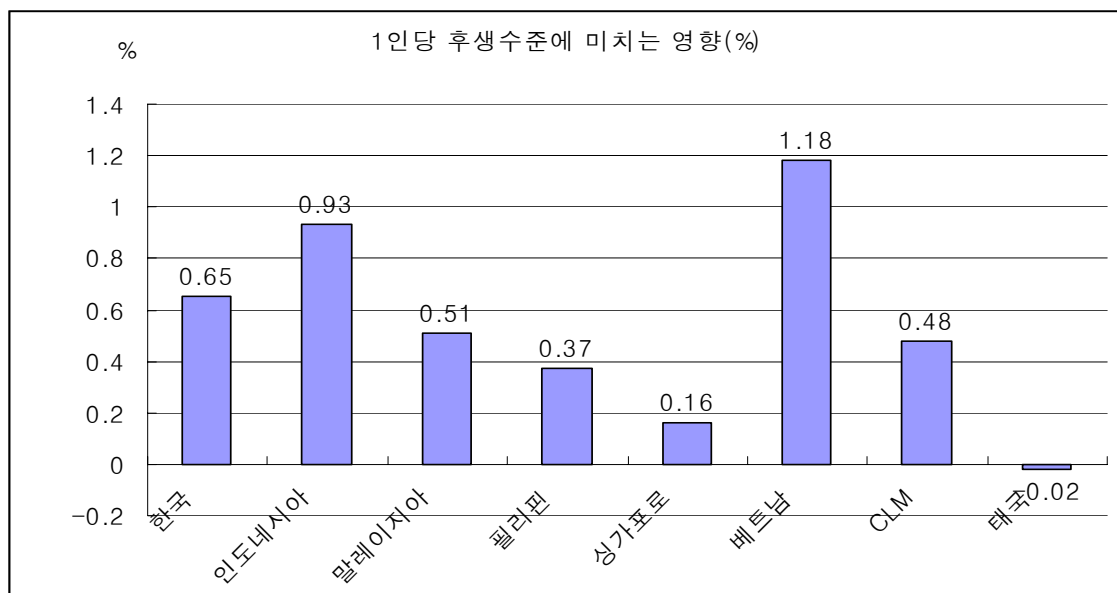
- 한·ASEAN FTA 상품협정문의 실질적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경제효과분석에 따르면 한·ASEAN FTA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와 1인당 후생수준은 각각 0.63%와 0.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3과 그림 4 참고).
- 이는 ASEAN 전체에 대한 실질 GDP 증가나 후생 증가에 비해 매우 큰 수준이며, 국별로 볼 경우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림 3. 한·ASEAN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



자료: 고종환(2006), 「한·ASEAN FTA 상품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분석」, p. 31에서 인용.

그림 4. 한·ASEAN FTA가 1인당 후생에 미치는 영향



자료: 고종환(2006), 「한·ASEAN FTA 상품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분석」, p. 32에서 인용.

- 산업별로는 섬유·직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철강, 금속 등이 한·ASEAN FTA로 인해 생산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쌀, 과일, 축산(육류 및 낙농), 수산제품에 대한 생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 참고).
- 농수산물목에서 생산량 증가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쌀의 경우 양허제외품목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ASEAN국가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목들도 대부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됨으로써 한·ASEAN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동시에 실질 GDP 및 후생의 증가로 인한 국내 수요 증가는 국내 농축산업제품에 대한 생산증가를 이끌어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표 4. 한·ASEAN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산업	생산
1. 쌀	0.23
2. 곡물	-0.14
3. 과일/채소	0.17
4. 축산(육류/낙농)	0.49
5. 가공식품	0.32
6. 기타농업	0.54
7. 수산업	0.35
8. 광업	-0.36
9. 섬유/직물	4.50
10. 종이/인쇄	0.93
11. 화학제품	1.43
12. 철강	1.15
13. 금속제품	1.00
14. 자동차 및 부품	1.61
15. 기타수송기기	0.53
16. 전기전자	-0.11
17. 기계류	0.70
18. 기타제조업	1.25
19. 서비스업	0.60

자료: 고종환(2006), 「한·ASEAN FTA 상품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분석」, p. 41에서 인용.

- 비록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되기는 하지만 서비스·투자 자유화에 있어 한국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CEP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동시에 추진한 일본이나 지난 2007년 1월 ASEAN과의 서비스협정문에 서명한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2007년 11월로 예정된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시한내에 양측의 합의를 이루어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서비스·투자 협상은 한국의 상품 수출을 촉진시키고 적극적인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품협상 못지 않은 중요성을 지니며, 한국의 對ASEAN 통상전략을 고려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함.